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6. 4. 20.>

평정단위별 서열 명부

1. 평정단위명:
2. 평정대상 직급:
3. 평정대상 기간: 부터 까지

순 위	성 명	근무부서	직책 또는 담당 직무	종합평정 등급(점수)	비 고

※ 확인자·평정자

구 분	직 위	직 급	성 명	서 명	날 짜
확 인 자					
평 정 자					
평 정 자					
평 정 자					
평 정 자					
평 정 자					
평 정 자					

작성요령

1.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기록한다.
2.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.
 - 평정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, 평정대상 공무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,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.
 -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 군(群)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. 다만, 평정 결과에 대한 피평정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10mm×297[백상지(80g/㎡)]